「교육혁신원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8. 1. 17. 개정 판 (시행 2018. 2. 1.) → 2019. 5. 13. 개정 판 (시행 2019. 5. 1.)

바뀜 6 · 신설 0 · 삭제 1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24/compare?from=791&to=1187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10:21:04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개정 2018-01-17〉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개정 2018-01-17〉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1-17〉	**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교육성과관리센터 6. 교육과정인증센터 7. 이러닝센터〈개정 2018-01-17〉 8. 행정지원팀〈개정 2018-01-17〉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1-17〉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디지털러닝센터 8. 〈삭제 2019-05-13〉
제7조(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기타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05-13〉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6.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7.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8.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9. 기타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과정인증센터) 교육과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2.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3.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4.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5. 기타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 삭제
제8조의2(이러닝센터)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8조의2(디지털러닝센터)** 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혁신단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5-13〉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혁신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7. 디지털러닝센터
8.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6.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7.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8.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9. 기타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이러닝센터"를 "디지털러닝센터"로 한다.

제8조의2 중 "이러닝센터"를 "디지털러닝센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를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로 하고, "이러닝센터팀장(간사)"를 "디지털러닝센터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정인증센터장"을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있다."를 "있다.〈개정 2019-05-1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